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5월 3일

군산시 조례 제 1847 호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군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공로패·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한 공적으로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공로패) 공로패는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3. 의회와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4. 기타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 및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시 수여한다.

-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 2.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 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건전한 행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상장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행사계획서 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 3. 상장문안

⑤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과 각 기관·단체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군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회에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의회사무국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의정계장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 ⑥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포상의 통제 등)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 ③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 ④ 지방세 등 체납자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17조(포상수여 사실확인서)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을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장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① 행사명				
② 주최(주관)	단체명		대표자	
③ 기간				
④ 목적				
⑤ 신청 사항	상 장 수 여		수여 대상 인원	
	후원명칭 사용승인			
⑥ 기타 협조 요청 사항				

<별지 제2호서식>

행 사 종 료 보 고 서

1. 승인 사항

① 행사명	
② 주최	
③ 일시	
④ 장소	
⑤ 참가내역	
⑥ 대회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홍보 또는 안내방법(사본첨부) - 시상내역(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교육감상 등) - 사진자료, 신문보도자료 등

2. 수상자 인적 사항

상장번호	이름	직위(업)	소속	생년월일	비고

3. 승인 사항 변경 여부 및 특기사항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

직 성 명 :

(표 창 문)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장 ○○○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

직 성 명 :

(감 사 문)

년 월 일

군산시의회 의장 ○○○○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공로패

주소 또는 소속 :

직 성명 :

(공로패 문안)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장 ○○○○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

직 성 명 :

(상 장 문)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장 ○○○ (직인)

주요 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별지 제8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서면심의 시 생략 ○ 참석인원 :				
심사대상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공적개요	
의결주문					
년 월 일 군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직 책	직 위	성 명	의결사항		서 명
			가	부	
위 원 장	부 의 장				
부 위 원 장	의회운영위원장				
위 원	의 장 추 천 의 원				
위 원	의 장 추 천 의 원				
위 원	의 회 사 무 국 장				

<별지 제9호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포 상 일 자	포 상 종 별	기 관	포 상 대 상 자				공적 개요	비고
				직 위 또는 직	소 속 또는 주 소	성별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소(포상당시)	
포 상 내 역	포상번호	
	포상구분	
	포상연월	
	공 적	
용 도		

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장 ○○○ (직인)

군산시 공고 제2021-892호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어항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나. 가산금의 징수 조항 삭제
- 다. 조례 내 오탈자 수정
- 라. 기타사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 관련 기관 명칭 변경 등)

3. 의견제출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항만해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항만해양과(전화 : 063-454-4782, FAX : 063-454-278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항만해양과 어항시설계(063-454-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를 “깨끗한 어항 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0조의”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어촌·어항법」”을 “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를 “제33조”로 한다.

제35조 중 “제30조”를 “제3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①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p> <p>4.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①-----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16조----- -----</p> <p>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생략)</p> <p>②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시장은 관할 국가어항 구역의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항내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처리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처리하여야 한다.</p>	<p>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 ----- 깨끗한 어항 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 ----- ----- ----- -----.</p>

제29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
사용한 자가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
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시장이 「어촌
·어항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
 해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 (생략)

제34조(회의록 작성) ①협의회 위원장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회의
 록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시장은 제30조
 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
 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 법 제43조
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회의록 작성) ①----- 제3
3조-----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 제33조--

 -----.

군산시 공고 제2021-896호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이의신청) 기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새만금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새만금에너지과 우) 54078
- 전 화 : 063-454-2715, FAX : 063-454-815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새만금에너지과 에너지관리계 (☎063-454-2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일”을 “1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이의신청) ① 선정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u>30일</u>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u>15일</u>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내용을 결정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6조(이의신청) ① ----- ----- -- <u>60일</u> ----- -----.</p> <p>② ----- ----- <u>10일</u> ----- ----- -----.</p>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본 시행규칙안은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연락처	(063) 454-4400

군산시 공고 제2021-932호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기준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환경부 정책에 맞춰 음식물수거용 개별계량 장치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법치에 맞는 시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개별계량장치에 대한 용어 신설 및 설치 사항 명시(제2조, 제17조)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 및 기준 개정(제17조, 제24조)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삭제(제2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조례를 우선으로 해석가능한 조문의 개정(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063-454-3462, FAX: 063-452-8166, 전자우편: dlkey009@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계(063-454-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이라한다”를 ““법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개별계량장치”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장치를 말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칙”을 “법 규칙”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치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보관시설, 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치”로, “법 제68조제1항제1호”를 “법 제68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을 “법 규칙”으로 한다.

제21조제2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기별로 1회”를 “연 1회로 하되,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로 1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표3”을 “영 별표 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법</u> <u>규칙</u>” 이라 한다-----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 설></u></p>	<p>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u>개별계량장치</u>”란 「<u>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u>」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u>개별계량장치</u>를 말한다.</p>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u>군산시장</u>(이하 “<u>시장</u>”이라한다)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및 <u>규칙</u>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지역은 분리배출지역에서 제외한다.</p>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u>시장</u>----- ----- ----- ----- ----- ----- ----- <u>별</u> <u>규칙</u>----- -----</p>

② (생략)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생략)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략)

②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치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치-----
-----.

③-----

----- 보관시설, 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치-----

----- 법 제68조제3항-----
-----.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규칙 -----
-----.

-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생 략)
- 2. 제20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 5. (생 략)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

- 1. (현행과 같음)
- 2. -----

----- . <후단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 연 1회로 하
되,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반
기별로 1회 -----
-----.

1.·2. (현행과 같음)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 영 별
표 8-----.

②-----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 성 자

작성자	군산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연락처	063-454-3440

군산시 공고 제2021-933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에 맞추어 지자체 조례에 재활용가능자원 내용을 추가하여 법치에 맞는 시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2]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내용 추가
 - 전지류, 형광등 배출요령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TEL. 063-454-3464, FAX. 063-452-8166, E-mail. soyeun27@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계(☎063-454-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7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문 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기타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기타병 - 농 약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4. 고 철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 (공기구, 못, 철사,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무색 PET병 (생수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병 (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6.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7.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이나 기름, 흙 등 이물질이 묻지 않는 의류 - 반드시 개어 끈으로 묶어 배출 - 이불, 솜, 커튼 등은 재활용이 안 됨
8. 전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구매처에 반환방식으로 배출 - 읍면동 사무소 수거함 및 공동주택 수거함, 동지역 의류수거함에 부착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9. 형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광등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읍면동 사무소 수거함 및 공동주택 수거함에 배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문 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캔, 알미늄캔 (음식용류) - 기타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기타병 - 농 약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행군후 음료수병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4. 고 철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 (공기구, 못, 철사,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 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6.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이나 기름, 흙 등 이 물질이 묻지 않는 의류 - 반드시 개어 끈으로 묶어 배출 - 이불, 솜, 커튼 등은 재활용이 안됨

[개정안]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문 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포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2.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기타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길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기타병 - 농 약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 철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 (공기구, 못, 철사,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무색 PET병 (생수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병 (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6.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7.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이나 기름, 흙 등 이물질이 묻지 않는 의류 - 반드시 개어 끈으로 묶어 배출 - 이불, 솜, 커튼 등은 재활용이 안 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8. 전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구매처에 반환 방식으로 배출 - 읍면동 사무소 수거함 및 공동주택 수거함, 동지역 의류수거함에 부착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9. 형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광등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읍면동 사무소 수거함 및 공동주택 수거함에 배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 성 자

작성자	군산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연락처	063-454-3440

군산시 공고 제2021-940호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3일

군 산 시 장



1. 제정 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지자체장의 자문 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상 운영하려는 경우 그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안 제4조~제12조)

3. 제정규칙(안) : 붙임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1. 05. 03. ~ 05. 24.(20일간)

5. 의견제출

위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기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063-454-3863, FAX: 063-454-3829)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063-454-38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군산시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산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재해영향 평가서를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서의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5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전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전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안전 심의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9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위원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위원수당 연 1,500천원 소요예상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연락처	(063) 454 - 3863

군산시 공고 제2021-941호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폐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3일

군 산 시 장



1.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음

2. 주요내용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기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063-454-3863, FAX: 063-454-3829)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063-454-38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21-943호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산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연장 관람료 감면을 및 감면대상자 확대(안 제10조)
-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규정 정비(안 제16조)

3. 의견제출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문화예술과(전화 : 454-3283, FAX : 063-454-326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전화 063-454-32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참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제6조 제1항”을 “제6조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100분의 30”을 “관람료를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을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제6조 제1항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때</p> <p>2. 3. (생략)</p>	<p>제8조(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 ----- -----.</p> <p>1. 제6조제1호-----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 및 관람료 감면)</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100분의 30 감면 할 수 있다.</p> <p>1.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p> <p>2. 3.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0조(사용료 및 관람료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관람료를 100분의 50을 ----- -----.</p> <p>1. ----- 장애인 및 보호자 1명</p> <p>2. 3. (현행과 같음)</p> <p>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p>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제16조(위탁운영) ① (생 략)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생 략)

제18조(위탁협약) 시장은 시민예술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협약) -----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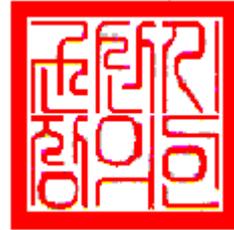
1. ~ 6. (현행과 같음)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공고 제2021-6호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장 군산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의 세부사항을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3일

군 산 시 장



1. 규 칙 명 :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2. 제정이유

- 군산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농식품 품질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하여 군산 로컬푸드 인증에 필요한 세부 위임사항을 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 및 업무추진의 체계성과 효율성 강화

3. 주요내용

- 인증표시 및 방법(안 제3조), 인증대상 및 기준(안 제4조)
- 인증 단계(안 제5조), 인증 신청(안 제6조), 인증 수수료(안 제7조)
- 신청 제한(안 제8조), 인증 유효기간(안 제9조), 인증취소(안 제10조)

4. 제정규칙(안) : 붙임참조

5. 입법예고기간 : 2021. 5. 3. ~ 2021. 5. 24.

6.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먹거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4065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로컬푸드계)

- 전 화 : 063)454-3042, FAX : 063)454-3009

- 전자우편 : juni3617@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 063-454-3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시행규칙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장 군산시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다.

제3조(인증표시 및 방법) ①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함)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군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품질 인증의 표시·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인증대상 및 기준) ① 인증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취급·가공된 축산물

3. 가공품 : 원·부재료를 군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원·부재료 함유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하며, 군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가공품의 특성상 군산시에 식품가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③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군산시 소재 음식점 또는 외식업체는 원·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품목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재료 사용비율에 따라 인증단계를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인증 단계) ① 농산물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5단계로 부여하며 1·2단계 인증 농산물 등은 로컬푸드직매장에 3·4·5 단계 인증 농산물 등은 로컬푸드와 연계된 전체 매장에 출하 할 수 있다. 단, 2·4·5단계 인증 농산물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우수관리 인증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공인 기관으로 부터 받은 친환경 인증을 인정하여 인증단계를 부여한다.

1. 1단계(예비단계)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2단계(GAP)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이며,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아 적정시비량을 준수한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3. 3단계(무제초제)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로,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아 적정시비량을 준수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4. 4단계(무농약)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아 화학비료를 적정시비량의 1/3 수준이하로 사용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농약인증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5. 5단계(유기농)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 검정시비처방을 받아 유기질비료로 적정시비량을 준수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인증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 기준」에 따른다.

③ 가공품은 제1항 각호에 따른 단계별 원·부재료 중 식재료 비중이 10% 이상인 농산물 대해 가장 낮은 단계의 인증 단계를 적용한다.

제6조(인증 신청) ① 군산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산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군산 로컬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
3. 신청 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4. 원·부재료 군산 로컬푸드 인증 확인서(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해당자)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다.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마.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식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인증 수수료) 인증 수수료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신청 제한) 제10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2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 기간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인증 취소) ① 시장은 인증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시 인증 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및 인증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농산물 통보일로 하며, 부적합 사항은 1년간 누적된다.

제11조(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군산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12조(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제4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인증심사원)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을 두며, 인증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 등 시료 채취

2. 별표 4의 현장 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

- ③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심사) ① 심사원은 별표 4에 따라 생산 품목별 연 2회 이상 현장 심사를 한다.

②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6조(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공인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3. 무항생제, 유기축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취급·가공된 축산물
4. 원·부재료를 군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제17조(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해 군산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산 로컬푸드 인증정지 및 취소에 대한 심의 의결
2. 그 밖에 위원장의 인증 관련 심의 요구 사항

③ 심의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군산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공무원, 농업인단체, 임직원, 생산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후관리) 인증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 생산·유통단계에서 연 2회 이상 토양·농작물 등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3조제1항 관련) 군산로컬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

1. 모양 및 색상



2. 도안의 설명

가. 두 사람이 마주 보고 함께하는 모습의 형상은 군산로컬푸드와 관련된 생산자, 매개자 (유통, 협력, 지원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소비자를 형상화한 상징물로 상호 연결하여, 군산 로컬푸드 관련자 모두가 하나되어 상생, 화합하며 발전해 나아감으로 행복하다는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나. 1) 상징물의 기본 컬러인 그린은 자연의 신선함에서 오는 먹거리의 안전함에 대한 신뢰의 의미를 담고 있다.

2) 생산자는 좌측의 그린 컬러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를 상징하고 우측의 오렌지 컬러는 만족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행복한 미소를 형상화하였다.

다. 생산자, 소비자가 만족해하며 미소띤 얼굴은 서로 상생하고 나아가 “더불어 함께 한다”는 내용을 친근감 있게 표현하였다.

라. 군산로컬푸드의 의의와 비전을 전체적으로 “상생”, “화합”, “신뢰”, “행복”의 이미지로 담아 형상화 하였다. 관련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창작이 가능하며 각종 홍보 등에 차별화된 전달력을 기대 할 수 있다.

3. 인증표시 문자

글씨체는 고딕 계열을 사용함으로써 군산로컬푸드 인증의 신뢰감을 높이고 슬로건이나 각종 적용 대상물과 서로 안정감 있게 어울릴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시인성이 강한 글씨체를 사용한다.

4. 매뉴얼

- 가. 작도는 매뉴얼의 작도법 예시에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비레로 재현하거나 축소, 확대해야 한다. 특히 상표의 재현 및 복사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 나. 매뉴얼 규정 내용을 참조하여 본 상징물을 활용하고, 규정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변형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별도 논의 후 제한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5. 인증번호 부여 방법

- 가. 군산로컬푸드 상표 아래 인증번호를 추가 사용한다.
- 나. 인증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
 (인증연도) (분류번호) (일련번호) (인증단계)
 - 인증연도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연도를 표기한다.
 - 품목별 분류번호는 “별표2”의 “분류번호”에 의한다.
 - 일련번호는 인증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 인증단계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 다. 인증단계는 상표 아래에 막대 형태로 색칠하여 표시한다.
 - 농산물은 5단계, 음식점은 3단계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 1단계 인증의 경우, 인증 상표 아래에 첫 번째 칸을 색칠하여 표시

1	2	3	4	5
---	---	---	---	---

1	2	3
---	---	---

※ 예시

- 2021년도에 과실품목 “배”를 1단계 인증을 첫 번째로 받은 경우 『2021 - 02 -0001 - I』으로 표기한다.

[별표2] (제4조 관련)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

품목군별	분류번호	분류군별	작물명	비고
식량작물	01	곡류	쌀, 보리, 밀, 호밀, 귀리, 옥수수, 조, 수수, 메밀 등	
		서류	감자, 고구마, 토란 등	
		콩류	대두, 녹두, 완두, 강낭콩, 팥 등	
과수 (수실)	02	인과류	사과, 배, 모과, 감, 석류 등	
		감귤류	감귤, 오렌지, 자몽, 레몬, 유자 등	
		핵과류	복숭아, 대추, 살구, 자두, 매실, 체리, 넥타린, 앵두 등	
		장과류	포도, 무화과, 오디, 산딸기, 참다래, 머루, 블루베리 등	
		수실류	밤, 호도, 잣 등	
채소	03	엽채류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상추, 양상추, 시금치, 들깻잎, 쑥갓, 아욱, 근대, 엔디브, 케일, 파슬리, 취나물 등	
		엽경채류	파, 부추, 마나리,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고사리, 치커리 등	
		근채류	무, 양파, 마늘, 당근, 생강, 연근 등	
		박과채소류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멜론 등	
		박과이외과채류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착색단고추(파프리카), 피망 등	
새싹채소류	콩나물, 녹두나물, 무순 등			
약용작물	04	약용작물류	구기자, 당귀, 맥문동, 울무(의이인),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산약),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오가피), 조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길경), 국화(감국), 감초, 배초향(곽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잇꽃(홍화), 동굴레(위유), 강활, 결명자, 두충, 목단피, 백지, 인진호, 반하, 고분, 식방풍, 황정, 개똥쑥, 애엽, 단삼, 익모초, 모과, 소엽, 만삼(당삼), 현삼, 헛개나무, 녹차잎 등	
특용작물	05	유지종실류	참깨, 들깨, 땅콩 등	
버섯	06	버섯류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고, 목이 등	
가공품	07	가공품류	반찬류, 장류, 잼류, 떡, 한과류, 드레싱소스류, 음료류 등	

* 품목군별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작목이 속한 분류군에 따라 구분함

[별표3] (제12조 관련)

인증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절차
	농업기술센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인증 신청 (인증 교육 이수)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top: 100px;">인증번호 사 용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서류검토 및 접수 : 해당부서</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 : 인증 심사원</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시료 분석 : 해당부서</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심의 의결 : 인증심의위원회</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결과통지 : 해당부서</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사후관리 : 해당부서</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장심사 일자 통보 - 현장심사 계획 수립 2. 현장심사 및 시료수거 - 농산물, 토양 (각 1점) 3. 시료 분석 4. 심의위원회 제출 5. 결과 통지 6. 사후 관리 - 생산(농업인 요청) 및 유통단계(랜덤) 검사

[별표 4] (제15조 제1항 관련)

현 장 심 사 표					
농 가 명		인증 단계	1~5단계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작 목			집 전 화		
항 목	배 점	내 용		평 점	비고
1. 농작물 재배(20점)	0~20점	○ 신청한 작물 및 재배지 등 일치			
2. 비료 보관 관리(20점)	0~20점	○ 강우 시 유출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 관리			
3. 유기합성농약 관리(20점)	0~20점	○ 시건장치, 제초제 구분 관리			
4. 환경보전 (20점)	0~20점	○ 폐농자재(농약병,비닐 등) 관리			
5. 수확 후 관리(20점)	0~20점	○ 운반포장 및 작업장 관리			
계	100점	※ 평점 60점 이상 시 적합으로 판정		점	

군산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 : (인)

현장 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9조 관련)

군산 로컬푸드 인증 연장신청서

신청자	성명(대표자)		인증 단계	1~5단계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농산물	품 목	토지번지		재배면적(m ²)	연간생산량(kg)	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출하시기

품목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공품

가공품명	원재료명 (생산지)	부재료명(생산지)	원·부재료 로컬푸드인증번호	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

접 수 일		현장심사통보일	
심의회제출일		결 과 통 보 일	
인증유효기간	~	로컬푸드 인증번호	

군산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농산물(축산물)	가 공 품
첨 부 서 류	1. 군산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2.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1부(필수) 3.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인증서본 1부(해당자) 4.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	1. 군산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2. 원부재료 군산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

[별지 제3호서식] (제13조 관련)

군산 로컬푸드 인증서

인증번호		인증 단계	<i>1~5단계</i>	유효기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생 산 지					
인증품목				재배면적 (규모)	

『군산로컬푸드 통합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단계 군산 로컬푸드 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공고 제2021-7호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3일

군 산 시 장



1. 조 례 명 :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사용료 미반환 규정이 법령 위반 및 소극행정 유발로 주민불편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료 반환(안 제9조)
 -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4.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입법예고기간 : 2021. 5. 3. ~ 2021. 5. 24.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먹거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4065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로컬푸드계)

- 전 화 : 063)454-3042, FAX : 063)454-3009

- 전자우편 : juni3617@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 063-454-3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개정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건
	찬 성	반 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9조(사용료 반환)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u> <u>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u> 	<p><u>제9조(사용료 반환)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u></p>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1-7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도내 타 시군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정용’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감면
- 수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2 규정에 의거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은 감면 대상 공익시설
- 안정적인 아동 보육 환경 조성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사립 유치원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 감면 추진

2. 주요내용

-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제6호나목 감면대상 확대
 -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설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 20% 감면

3.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4까지 군산시장(참조 :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 1)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층 수도과
- 2) 팩스 : 063-454-534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수도과(전화 : 063-454-5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 지원한다. 단,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 5. (생략)</p> <p>6.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에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p> <p>가. (생략)</p> <p>나. <u>관내 공립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로 상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 지원한다.</u></p> <p>다. (생략)</p> <p>7. (생략)</p> <p>② (생략)</p>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u>상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 지원한다.</u> <u>단,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u></p> <p>다.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수용가에 감면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장 김경배
연락처	(063) 454-5340

군산시 고시 제2021-5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4호선외 4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지곡동 60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4호선외 4)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4월 16일

◆ 사업의 개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60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사업
 - 나. 명 칭 : 지곡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중로 1-14 : L=70m, B=4m / 나. 중로 2-13 : L=200m, B=3m /
 - 다. 중로 2-188 : L=47m, B=15m / 라. 소로 1-475 : L=30m, B=10m /
 - 마 공공공지 39호 : A=599㎡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63길 4, 606호(어양동, 하모니시티)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주)은성종합개발 대표 유병성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0.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중로1-14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지곡동	606	도	22,375.3	235	군산시					
계	1필지			22,375.3	235						

○ 중로2-188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나운동	174-33	임	518	518	국(기획재정부)					
2	나운동	174-35	임	193	193	국(기획재정부)					
3	나운동	산224-9	도	41	41	국(국토교통부)					
4	지곡동	산64-2	임	2	2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계	4필지			754	754						

○ 중로2-13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지곡동	147-16	도	49	27	군산시					
2	지곡동	297-9	도	13	13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3	지곡동	298-11	답	151	151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4	지곡동	298-9	도	4	4	군산시					
5	지곡동	299-6	전	40	40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6	지곡동	299-7	대	19	19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7	지곡동	306-5	전	45	45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8	지곡동	307-2	대	59	59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9	지곡동	309-6	대	119	119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0	지곡동	309-8	도	14	14	김덕*룡	군산시 지곡동 309				
11	지곡동	310-16	도	13	13	군산시					
12	지곡동	310-20	도	4	4	군산시					
13	지곡동	310-25	대	203	1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4	지곡동	310-24	답	39	39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5	지곡동	310-23	답	2	1	최*호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4길16-6(인후동1가)				
16	지곡동	606	도	22,375.3	63	군산시					
계	16필지			22,873.3	358						

○ 소로1-475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지곡동	147-16	도	49	22	군산시					
2	지곡동	310-18	도	32	32	군산시					
3	지곡동	310-25	대	203	202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4	지곡동	310-23	답	2	1	최*호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4길16-6 (인후동1가)				
5	지곡동	311-3	도	3	3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6	지곡동	313-7	대	20	20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7	지곡동	313-5	도	24	24	군산시					
계	7필지			333	304						

○ 39호 공공공지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지곡동	313-6	대	95	95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2	지곡동	315-3	전	26	26	국(법무부)					
3	지곡동	316-10	대	51	51	국(법무부)					
4	지곡동	316-14	대	37	37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5	지곡동	316-13	임	140	140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6	지곡동	산69-1	임	5	5	주식회사 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7	지곡동	산71-12	임	244	244	국(법무부)					
8	지곡동	산71-14	임	1	1	국(법무부)					
계	8필지			599	599						

군산시 고시 제2021-55호

경관지구 건축선 지정 고시

건축법 제46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건축법 제46조 제3항에 의거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군 산 시 장



1. 경관지구로 지정된 주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한 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다만, 월명공원 주변 경관지구는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가. 시가지경관지구(중심) : 3미터
 - 나. 특화경관지구 : 2.5미터
 - 다. 시가지경관지구(일반) : 2미터
2. 경관지구에 따로 지정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물 및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 및 주변 상황 등으로 인하여 경관지구 안의 건축선 지정이 불합리하다는 건축주의 의견에 따른 완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선을 완화할 수 있다.

가. 기존건축물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나. 도로면을 기준으로 대지면의 높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다. 택지조성 완료 등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건축선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거나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법 규정에 의한다.

5. 경관지구에 따로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은 대지면적에 산입한다.

6. 경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의 경사도는 인도와 수평이 되도록 하고 견고하고 양호한 바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7.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보행로, 조경, 예술장식품, 조명, 벤치 등 미관 증진과 시민휴게공간 조성 및 관련된 시설은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 물품적치 등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군산시 고시 제2014-85호(2014.8.4.) 『미관지구 건축선 지정 고시』는 이 고시를 고시한 날부터 폐지한다.

군산시 고시 제2021-5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27.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 지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명 칭 : (주)하나자산신탁

나. 대 표 자 : 이창희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0년 11월 16일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1년 4월 22일

5. 사업내용(변경승인 내용 반영)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산66 외 66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다. 대지면적 : 41,830㎡

라. 건축면적 : 11,914.3880㎡(건폐율 : 28.48%)

마. 연 면 적 : 141,449.4844㎡ (용적율 : 216.77%)

바. 건축규모 : 지하 3층~지상 29층 / 아파트 10개동 외, 665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계		665				
84A	민영주택	255	84.9413	24.5789	109.5202	
84B	민영주택	118	84.8829	25.3706	110.2535	
118	민영주택	157	118.9057	33.4252	152.3309	
146	민영주택	120	146.9166	39.4219	186.3385	
119	민영주택	11	119.9461	33.9490	153.8951	
181	민영주택	2	181.4265	52.7878	234.2143	
238	민영주택	2	238.7563	65.7639	304.5202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294,312,436천원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4년 1월 30일

6. 변경내용(금회)

가. 사업주체 변경

1) 당초 : (주)은성종합개발 대표 유병성

2) 변경 : (주)하나자산신탁 대표 이창희

나. 대지면적 변경 : 지적분할 등으로 대지면적 220.8m² 감

1) 당초 : 42,050.8m²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 45,331m²)

2) 변경 : 41,830.0m²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 45,219m²)

7.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58	지곡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지곡동 산66번지 일원	45,331.0	감) 112.0	45,219.0	

2)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m ²)	결정사유
변경	58	군산시 지곡동 산66번지 일원	•면적변경 - 45,331.0 → 45,219.0 (감 112.0)	지적분할에 따른 확정면적으로 정정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88	15	국지 도로	47	대로2-9	나운동 1494-2	일반 도로	-	2020.11.19	
기정	소로	1	475	10	국지 도로	30	중로2-13	지곡동 313-2	일반 도로	-	2020.11.19	
기정	중로	1	14	20~24	보조 간선	1,030 (70)	광로2-3	대로2-9	일반 도로	나운3택지	전북고41 (‘95.3.28)	
기정	중로	2	13	15~18	집산 도로	850 (200)	지곡동 대로1-2	지곡동 대로2-11	일반 도로	나운3택지 지곡신시가지	전북고41 (‘95.3.28)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9	공공공지	지곡동 313-6번지 일원	592	증) 7	599	2020.11.19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변경	39	공공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 지곡동 313-1번지 일원 - (변경) 지곡동 313-6번지 일원 ※ 지적분할에 따른 지번변경 • 면적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2m² → 599m² (증 7m²) (L=148m, B=4m) 	지적분할에 의한 확정면적으로 정정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1BL	45,331.0	감) 112.0	45,219.0	1-①	지곡동 산66번지 일원	42,050.8	감) 220.8	41,830.0	공동주택용지
					1-②	나운동 174-18번지 일원	745.0	증) 9.0	754.0	도로용지 (중로2-188)
					1-③	나운동 1494-2번지 일원	791.0	증) 94.0	885.0	도로용지 (현황도로 정비)
					1-④	지곡동 606번지 일원	849.2	감) 2.2	847.0	도로용지 [중로1-14, 중로2-13]
					1-⑤	지곡동 147-12번지 일원	895.0	증) 8.0	903.0	도로(소로1-475) 및 공공공지(39호)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	1-①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폐율	• 35% 이하	조례 60% 이하
		용적률	• 235% 이하	조례 250% 이하
		높 이	• 29층 이하	

4)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주변에 한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지정된 구간 이외 지역에서는 차량출입 불허
주변도로 신설 및 폭원확장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 신설 및 확폭 - 중로2-188호선 신설(L=47m, B=15m) : 주출입도로 개설 - 소로1-475호선 신설(L=30m, B=10m) : 대체도로 개설 - 중로1-14호선 일부구간(L= 70m) 확폭개설 : B=중 4m - 중로2-13호선 일부구간(L=200m) 확폭개설 : B=중 3m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9.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1-59호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1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1. 4. 30.

군 산 시 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피해 소규모·영세 자영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1. 8. 31.	2021.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제외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소규모 자영업자 (외부조정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성실신고 확인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착한임대인	매출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연장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1)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4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1-60호

군산 도시관리계획(군산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대학교)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1. 5. 3.

군 산 시 장



1.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대학 (군산대학교)	군산시 미룡동 산 68번지 일원	804,150	감)2,250	801,900	전북고56 (1991.2.9.)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학교	○ 면적 변경 804,150m ² → 801,900m ² , 감) 2,250m ²	대로1-5호선과 중첩된 일부 토지를 제척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 총괄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04,150	감) 2,250	801,900	100		
군산 대학교	교육시설	341,532	감) 5,872	335,660	41.86	
	체육시설	56,520	증) 27,255	83,775	10.45	
	도 로	42,496	증) 1,972	44,468	5.54	
	녹 지	363,602	감) 25,605	337,997	42.15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학교	○ 면적 변경 804,150m ² → 801,900m ² , 감) 2,250m ²	대로1-5호선과 중첩된 일부 토지를 제척

○ 건축물 계획 결정(변경) 세부조서

시설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804,150	감)2,250	801,900	76,814	감)1,413.04	75,400.96	243,112	증)11,451.98	254,563.98	
교사 시설지	소 계				341,532	감)5,872	335,660	38,480	감)450.86	38,029.14	137,562	증)7,324.57	144,886.57	
	2	1	대학 본부	대학 본부	-	-	-	2,209	감)1.26	2,207.74	7,138	감)1.30	7,136.70	시설번호 호오류
	1	2	황룡 도서관	황룡 도서관	-	-	-	1,217	감)194.27	1,022.73	4,015	감)322.94	3,692.06	1,2바깥
	4, 51	4	학생 회관	제1 학생회관	-	-	-	3,623	감)1,542.15	2,080.85	11,416	감)6,118.11	5,297.89	개별 동별구 분
		51		제2 학생회관	-	-	-		증)1,541.53	1,541.53		증)6,117.84	6,117.84	
	5, 6, 33	5	이학관	자연대 1,2호관	-	-	-	3,429	감)1,749.60	1,679.40	14,714	감)7,661.42	7,052.58	개별 동별구 분
		6		자연대 3호관	-	-	-		증)1,042.74	1,042.74		증)4,464.72	4,464.72	
		33		자연대 4호관	-	-	-		증)679.41	679.41		증)3,195.63	3,195.63	
	7	7	예술대	예술대 1호관	-	-	-	2,579	감)907.05	1,671.95	7,349	감)1,151.84	6,197.16	개별 동별구 분
		29		예술대 3호관	-	-	-		증)275.74	275.74		증)1,351.84	1,351.84	
	9, 10, 14, 32	9	공대1,2,3,5호관	공대 1호관	-	-	-	4,177	감)3,100.87	1,076.13	19,412	감)14,899.25	4,512.75	개별 동별구 분
		10		공대 2호관	-	-	-		증)1,012.14	1,012.14		증)5,453.79	5,453.79	
		14		공대 3호관	-	-	-		증)1,791.46	1,791.46		증)9,444.96	9,444.96	
		32		공대 5호관	-	-	-		증)1,090.14	1,090.14		증)3,526.98	3,526.98	

시설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교육기본시설	11	11	공대 4호관	공대 4호관	-	-	-	1,656	감)692.08	963.92	4,004	감)0.06	4,003.94	
	16	16	예술대 2호관	예술대 2호관	-	-	-	1,409	감)298.73	1,110.27	2,508	감)0.78	2,507.22	
	17	17	인문관	인문관	-	-	-	3,642	-	3,642.00	12,606	증)0.09	12,606.09	
	18	18	사회 과학관	사회 과학관	-	-	-	2,202	증)306.44	2,508.44	8,576	감)100.13	8,475.87	
	26	26	산학연 협동관	산학연 협동관	-	-	-	1,342	감)0.55	1,341.45	5,626	감)103.40	5,522.60	
	34	-	자연대 4호관	-	-	-	-	1,053	감)1,053.00	-	1,813	감)1,813.00	-	중복폐지
	35, 36	35, 36	해양 과학관	해양대 1호관 해양대 2호관	-	-	-	4,162	감)1,903.96 증)1,636.50	2,258.04 1,636.50	21,569	감)8,006.24 증)8,005.52	13,562.76 8,005.52	개별 동별구분
	41	41	중앙 도서관	중앙 도서관	-	-	-	1,948	감)0.35	1,947.65	7,706	감)158.01	7,547.99	
	50	50	공동실험실습관	공동실험실습관	-	-	-	3,832	증)23.70	3,855.70	9,110	증)24.23	9,134.23	
	-	65	-	공과대학 통합교육관	-	-	-	-	증)1,500	1,500.00	-	증)6,000.00	6,000.00	신설
-	66	-	숲속 도서관	-	-	-	-	증)93.21	93.21	-	증)75.45	75.45	신설	
소 계					-	-	-	18,998	증)1,876.36	20,874.36	63,114	증)11,302.75	74,416.75	
교사시설	3	3	종합 교육관	종합 교육관	-	-	-	1,786	감)26.64	1,759.36	5,668	감)0.31	5,667.69	
	8	8	체육관	체육관	-	-	-	3,015	감)70.99	2,944.01	4,158	증)98.65	4,256.65	
	34	34	체육관	스포츠 과학관	-	-	-	-	증)1,052.37	1,052.37	-	증)1,812.87	1,812.87	누락반영
	19	19	생활관 관리동	생활관 관리동	-	-	-	1,499	감)0.86	1,498.14	2,867	감)0.70	2,866.30	
	20, 21, 22, 23, 49, 60	20, 49, 60	기숙사	BTL 생활관 기숙사 기숙사	-	-	-	6,757	감)3,257 증)1,072 증)2,185	3,500.00 1,072.00 2,185.00	35,381	감)18,381.00 증)7,789.27 증)13,892.00	17,000.00 7,788.27 13,892.00	개별 동별구분
	24	24	동력실	동력실	-	-	-	790	감)0.76	789.24	897	증)29.40	926.40	증설
	30	30	정문 안내실	정문 안내실	-	-	-	71	감)0.96	70.04	63	감)0.31	62.69	
	31	31	창업보육 센터	창업보육 센터	-	-	-	1,080	감)0.6	1,079.40	1,080	감)0.60	1,079.40	
	56	56	매 점	두드림 센터	-	-	-	1,000	증)924.80	1,924.80	2,000	증)6,064.48	8,064.48	
	57	57	게스트 하우스	게스트 하우스	-	-	-	3,000	-	3,000.00	11,000	-	11,000.00	
소 계					-	-	-	5,240	감)319.50	4,920.50	15,585	증)855.67	16,440.67	
연구시설	44	44	디지털 기술정보 센터	디지털 기술정보 센터	-	-	-	2,600	감)318.81	2,281.19	8,064	증)899.06	8,963.06	증설
	55	55	황룡 문화관	황룡 문화관	-	-	-	1,990	감)0.22	1,989.78	4,995	감)42.42	4,952.58	
	58	58	해양생물 연구센터	해양생물 연구센터	-	-	-	650	감)0.47	649.53	2,526	감)0.97	2,525.03	

시설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	-	-	14,096	감)2,519.04	11,576.96	26,851	감)8,031.01	18,819.99	
교사 시설지 부속 시설	13. 15	13	공대 부속공장	공대 부속공장	-	-	-	2,103	감)1,553.60	549.40	5,636	감)445.80	5,190.20	개별 동별 구분
		15		조파 실험실	-	-	-		증)445.80	445.80		증)445.80	445.80	
	12	12	구조재료 실험관	구조재료 실험관	-	-	-	260	-	260.00	280	감)0.53	279.47	
	25	25	목공창고	목공창고	-	-	-	276	감)0.6	275.40	276	감)0.60	275.40	
	27	27	본부석	본부석	-	-	-	223	-	223.00	223	-	223.00	
	28	28	온 실	온 실	-	-	-	200	감)59.31	140.69	200	감)59.31	140.69	
	37	37	양어장	양어장	-	-	-	1,501	감)1.04	1,499.96	1,972	감)0.80	1,971.20	
	38	38	수산공학 실험관	수산공학 실험관	-	-	-	310	감)90.40	219.60	310	감)0.40	309.60	
	39	39	식품가공 실습관	식품가공 실습관	-	-	-	977	감)0.80	976.20	977	감)0.80	976.20	
	40	40	기관공장	기관실습 실	-	-	-	1,164	감)4.80	1,159.20	1,491	감)0.60	1,490.40	
	42	42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	-	-	1,167	증)406.05	1,573.05	1,354	증)219.05	1,573.05	
	43	43	차고	차고	-	-	-	60	-	60.00	60	-	60.00	
	45	45	인조 잔디구장 관리소	인조 잔디구장 관리소	-	-	-	60	감)14.64	45.36	60	감)14.64	45.36	
	46	46	학생 테니스장 관리소	학생 테니스장 관리소	-	-	-	140	-	140.00	140	-	140.00	위치 이동
	47	47	골프 학습장	골프 학습장	-	-	-	933	감)0.3	932.70	988	감)27.82	960.18	
	48	48	외국인 생활관	외국인 생활관	-	-	-	168	감)0.08	167.92	804	감)0.22	803.78	
	52	52	학군단 (창고포함)	학군단 (창고포함)	-	-	-	574	감)0.78	573.22	1,600	-	1,600.00	
	53	53	버스차고	버스차고	-	-	-	1,500	-	1,500.00	1,500	-	1,500.00	
	54	54	후생종합 복지관	두드림 센터	-	-	-	2,000	감)2,000	-	8,500	감)8,500.00	-	두드림 센터로 통합
59	59	해상안전 교육장	해상안전 교육장	-	-	-	330	-	330.00	330	-	330.00		
60	61	폐기물 보관창고	폐기물 보관창고	-	-	-	150	감)100	50.00	150	감)100.00	50.00	개별 동별 구분	
	62		폐기물 보관창고	-	-	-	-	증)50	50.00	-	증)50.00	50.00		
	63		폐기물 보관창고	-	-	-	-	증)50	50.00	-	증)50.00	50.00		
-	64	-	폐기물 보관창고	-	-	-	-	증)100	100.00	-	증)100.00	100.00	신설	
-	67	-	전시관	-	-	-	-	증)213.26	213.26	-	증)213.26	213.26	신설	
-	68	-	전망대 (풍림관)	-	-	-	-	증)42.20	42.20	-	증)42.20	42.20	신설	

시설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운동 시설지	소 계				56,520	증)27,255	83,775	-	-	-	-	-	-	시설 번호 변경
	61	69	대운동장	대운동장	31,267	증)23,623	54,890	-	-	-	-	-	-	
	62	70	테니스장	테니스장1	6,674	감)1,464	5,210	-	-	-	-	-	-	
	63	71	농구장	농구장	2,744	증)36	2,780	-	-	-	-	-	-	
	-	72	-	테니스장2	-	증)3,575	3,575							
	64	73	다목적 운동장	다목적 운동장	15,835	증)1485	17,320	-	-	-	-	-	-	
교통시설지	도 로				42,496	증)1,972	44,468	-	-	-	-	-		
녹 지	녹 지				363,602	감)25,605	337,997	-	-	-	-	-		

※ 시설번호 제외 사유 : 21, 22, 23 제외 = 20번 BTL생활관으로 기숙사 통합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게재 생략

군산시 공고 제2021- 845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대야 금산선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공고문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16.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야 금산선 도로확포장공사
- 위 치 :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671-16 ~ 191-10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2km, B=8.0m
-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2. 열람공고 기간 : 2021. 4. 20. ~ 2021. 5. 4.(15일간)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 지 :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72-40 외 2필지
- ※ 세부내역은 군산시청 건설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1. 4. 20. ~ 2021. 5. 4.
- 열람 장소 : 군산시청 안전건설국 건설과 (☎ 063-454-3952)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군산시청 건설과에 서면으로 제출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및 보상시기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협회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진행 예정임
- 보상방법 :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장(건설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추후 지적측량 등 행정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의 견 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1.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군 산 시 장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671-16	도	4,774	4	군산시					
2	"	671-17	도	1,836	6	국(농림축산 식품부)					
3	"	136-42	창	98.0	98.0	군산시					
4	"	136-43	답	42.0	42.0	군산시					
5	"	2566	도	2,197	2,156	국(농림축산 식품부)					
6	"	2278-1	구	298.7	298.7	한국농어촌 공사					
7	"	2477-4	답	479.0	479.0	배상철					
8	"	2567	구	436	19	국(농림축산 식품부)					
9	"	2565	도	1,557	30	국(농림축산 식품부)					
10	"	2480-9	답	633.2	633.2	군산시					
11	"	2575	구	912	18	국(농림축산 식품부)					
12	"	2482-9	답	646.8	646.8	군산시					
13	"	2579	구	912	18	국(농림축산 식품부)					
14	"	2580	도	1,414	30	국(농림축산 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484-10	답	655.2	655.2	군산시					
16	"	2583	구	885	17	국(농림축산 식품부)					
17	"	2486-10	답	673.4	673.4	군산시					
18	"	2584	구	613	19	국(농림축산 식품부)					
19	"	2585	도	880	30	국(농림축산 식품부)					
20	"	2487-8	답	658.5	658.5	군산시					
21	"	2295	구	2,046	336	국(농림부)					
22	"	2302	도	1,162	128	국(농림부)					
23	"	2115-12	답	1,427.7	1,427.7	군산시					
24	"	2304	구	1,342	80	국(농림부)					
25	"	2305	도	2,053	117	국(농림부)					
26	"	2116-15	답	37.6	37.6	군산시					
27	"	2116-16	답	137.4	137.4	군산시					
28	"	2116-17	답	674.2	674.2	군산시					
29	"	2116-18	답	53.8	53.8	한국농어촌 공사					
30	"	2307	도	1,912	73	국(농림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1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010	구	10,566	244	국(농수산 부)					
32	"	272-39	답	29.6	29.6	한국농어 촌공사					
33	"	272-24	답	6.2	6.2	군산시					
34	"	272-20	답	8	8	한국농어 촌공사					
35	"	272-40	답	433.6	433.6	이해갑	군산시 미장남로 100, 109동 1904호 (미장동,미장대원칸타빌)				
36	"	272-25	답	61.6	61.6	군산시					
37	"	272-21	답	179	179	한국농어 촌공사					
38	"	272-22	답	175	175	한국농어 촌공사					
39	"	272-26	답	63.6	63.6	군산시					
40	"	271-6	도	6,332	66	국(농림부)					
41	"	272-38	답	487.8	487.8	군산시					
42	"	272-27	답	252.3	252.3	정철희	중앙로2가 110-3				
43	"	272-28	답	189.2	189.2	군산시					
44	"	272-37	답	217.4	217.4	군산시					
45	"	272-29	답	394.8	394.8	정영근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327-19				
46	"	272-36	답	232.1	232.1	군산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7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72-35	답	346.0	346.0	군산시					
48	"	272-30	답	270.9	270.9	군산시					
49	"	272-31	답	279.0	279.0	군산시					
50	"	272-34	답	344.0	344.0	군산시					
51	"	272-32	답	298.3	298.3	군산시					
52	"	272-33	답	324.9	324.9	군산시					
53	"	278-13	구	1,614	51	국(농림부)					
54	"	191-9	답	843	412	군산시					
55	"	191-8	도	782	188	전라북도					
56	"	2010-4	구	67	24	국 (농수산부)					
57	"	191-10	도	1,840	118	전라북도					

군산시 공고 제2021-866호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공고

도로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 허가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군 산 시 장



도로의 종류	국도21호선	노 선 명	새만금북로
공사의 종류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구 간 공사시행장소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27번지 도로 일원		
공사 기간	허가일로부터 ~ 2022.12.14.		
공사 목적 및 내용	새만금 남북도로 개설에 따른 교차로 진출입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선 공사		
공사시행자의 주소·성명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오식도동) 새만금개발청	기타사항	SK건설 ☎063-467-8640